|  |  |  |
| --- | --- | --- |
|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 향유에 관한 통지**재세[2018]74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공업과정보화 주관부문, 교통운송청(국),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공업과정보화위원회:에너지 절약을 촉진시키고 신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및 그 실시조례 유관 규정에 근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사용(이하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 에너지절약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한다.1.1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하는 에너지절약 승용차는 동시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1.1 중국 경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배기량이 1,600cc 이하(1,600cc 포함)인 휘발유 및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하이브리드 및 혼합연료와 두 가지 연료 사용 승용차 포함).1.1.2 종합 작동상태에서의 연료 소모량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 요구는 첨부1을 참고한다.1.2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하는 에너지절약 상용차는 동시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2.1 중국 경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배기량이 1,600cc 이하(1,600cc 포함)인 천연가스, 휘발유 및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소형과 중형 상용차(하이브리드 및 혼합연료와 두 가지 연료 사용 상용차 포함).1.2.2 휘발유 및 디젤을 사용하는 소형과 중형 상용차 종합 작동상태 연료 소모량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 요구는 첨부2와 첨부3을 참고한다. 2. 신에너지 차량•선박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2.1 차량선박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차는 순수 전기 상용차, 플러그 인(주행거리 연장 포함) 하이브리드 차, 연료전지 상용차를 가리킨다. 순수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차량선박세 징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2 차량선박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차는 동시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2.1 중국 경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순수 전기 상용차, 플러그 인(주행거리 연장 포함) 하이브리드 차, 연료전지 상용차. 2.2.2 신에너지차 제품 기술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구체적 요구는 첨부4를 참고한다.2.2.3 신에너지차 전문 항목검사를 통과하고, 신에너지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 요구는 첨부5를 참고한다. 2.2.4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또는 신에너지차를 수입하는 대리상은 제품 품질 보증, 제품 일관성, A/S, 안전 테스트, 동력전지 회수 이용 등 방면에서 관련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 요구는 첨부6을 참고한다.2.3 차량선박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선박은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박의 주(主) 추진동력장치는 순수 천연가스 엔진이다. 엔진이 소량의 디젤 점화방식을 사용하고 점화 발열량이 전체 연료 총 발열량 비율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순수 천연가스 엔진으로 간주한다. 3. 상술한 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는 공업과정보화부, 세무총국이 비정기적으로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를 향유하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사용 자동차 차량 모델 목록>(이하 ‘<목록>’)을 연합 발표하여 이를 공고한다. 4. 자동차 생산기업 또는 수입자동차 대리상(이하 ‘자동차 기업’)은 공업과정보화부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재세우대목록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원하여 에너지절약 차량 모델 보고 및 신에너지 차량 모델 보고(보고 양식은 첨부7과 첨부8을 참고)를 제출하고, 그 제품을 <목록>에 들어가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업과정보화부, 세무총국은 공업과정보화부 장비공업 발전센터에 위탁하여 <목록> 작성 및 신고, 홍보 교육, 구체적 기술심사와 감독검사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공업과정보화부 장비공업 발전센터 심사결과는 공업과정보화부 홈페이지에 5 업무일간 공시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목록>에 넣어 발표한다. 제품과 신고자료가 부합하지 않고, 제품 성능지표가 기준에 도달하지 않거나 또는 자동차 기업이 기타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목록>에 들어간 후 12개월 내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없는 차종은 공업과정보화부 홈페이지에 5 업무일간 공시해 이의가 없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한다. 5. 선박검사기구는 선박 주(主) 추진동력장치에 대해 검사 결정 시, 본 통지의 신에너지선박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그 선박용 제품증서에 “순수 천연가스 엔진”이라고 표시한다. 선박 건조 검사 시에는 선박 주(主) 추진동력장비 선박용 제품증서에 “순수 천연가스 엔진”이라고 표시된 경우, 그 검사증서 서비스 페이지에 “순수 천연가스 동력 선박”이라고 표시한다. “순수 천연가스 엔진”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主) 추진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 통지의 신에너지선박 기준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경우 선박연도검사 시 선박검사기구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선박검사기구는 심사자료와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본 통지 신에너지선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서비스 페이지에 “순수 천연가스 동력 선박”이라고 표시한다. 납세자는 “순수 천연가스 동력 선박”이 표시된 선박검사증서를 근거로 차량선박세 면세 우대를 향유한다. 6.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 교통운송부는 자동차와 선박의 기술 진보, 산업발전 등 요소에 근거 적시에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인정기준을 조정한다.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를 향유하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심사와 인정 등 관련 관리업무 전개 과정 중 관련 부문 및 그 업무 인원에게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채우러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공무원법>, <행정감찰법>,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등 유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허위 정보 제공으로 <목록> 자격을 편취하여 들어간 자동차 기업 및 허위 자료를 제공한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본 통지 발표 후, 새로운 공고의 각 회차<목록>(이하 ‘<목록>’)에 들어간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는 신(新)<목록> 공고일로부터 신(新)<목록>과 본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 정책을 향유한다. 신(新)<목록> 공고 후, 제1차, 제2차, 제3차 차량선박세 우대 차량 모델 목록은 동시에 폐지한다. 신(新)<목록> 공고 전 이미 취득한 제1차, 제2차, 제3차 차량선박세 우대 차량 모델 목록에 들어있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는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8.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의 에너지절약•신에너지사용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5]51호) 및 재정부 판공청, 세무총국 판공청, 공업과정보화부 판공청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를 향유하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모델 목록’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재판세[2017]6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다운로드):1. 에너지절약 승용차 종합 작동상태 연료소모량 허용치 기준.docx2. 에너지절약 소형 상용차 종합 작동상태 연료소모량 허용치 기준.docx3. 에너지절약 중형 상용차 종합 작동상태 연료소모량 허용치 기준.docx4. 신에너지차 제품기술 기준.docx5. 신에너지차 제품 전문항목검사 기준 목록.docx6. 신에너지차 기업 요구.docx7. 에너지절약 차량 모델 보고.docx8. 신에너지 차량 모델 보고.docx재정부세무총국공업과정보화부교통운송부2018년 7월 10일 |  | **关于节能新能源车船享受车船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8〕74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交通运输厅（局），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工业和信息化委员会：为促进节约能源，鼓励使用新能源，根据《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及其实施条例有关规定，经国务院批准，现将节约能源、使用新能源（以下简称节能、新能源）车船的车船税优惠政策通知如下：　　一、对节能汽车，减半征收车船税。　　（一）减半征收车船税的节能乘用车应同时符合以下标准：　　1.获得许可在中国境内销售的排量为1.6升以下（含1.6升）的燃用汽油、柴油的乘用车（含非插电式混合动力、双燃料和两用燃料乘用车）；　　2.综合工况燃料消耗量应符合标准，具体要求见附件1。　　（二）减半征收车船税的节能商用车应同时符合以下标准：　　1.获得许可在中国境内销售的燃用天然气、汽油、柴油的轻型和重型商用车（含非插电式混合动力、双燃料和两用燃料轻型和重型商用车）；2.燃用汽油、柴油的轻型和重型商用车综合工况燃料消耗量应符合标准，具体标准见附件2、附件3。　　二、对新能源车船，免征车船税。　　（一）免征车船税的新能源汽车是指纯电动商用车、插电式（含增程式）混合动力汽车、燃料电池商用车。纯电动乘用车和燃料电池乘用车不属于车船税征税范围，对其不征车船税。　　（二）免征车船税的新能源汽车应同时符合以下标准：　　1.获得许可在中国境内销售的纯电动商用车、插电式（含增程式）混合动力汽车、燃料电池商用车；　　2.符合新能源汽车产品技术标准，具体标准见附件4；　　3.通过新能源汽车专项检测，符合新能源汽车标准，具体标准见附件5；　　4.新能源汽车生产企业或进口新能源汽车经销商在产品质量保证、产品一致性、售后服务、安全监测、动力电池回收利用等方面符合相关要求，具体要求见附件6。　　（三）免征车船税的新能源船舶应符合以下标准：船舶的主推进动力装置为纯天然气发动机。发动机采用微量柴油引燃方式且引燃油热值占全部燃料总热值的比例不超过5%的，视同纯天然气发动机。　　三、符合上述标准的节能、新能源汽车，由工业和信息化部、税务总局不定期联合发布《享受车船税减免优惠的节约能源使用新能源汽车车型目录》（以下简称《目录》）予以公告。　　四、汽车生产企业或进口汽车经销商（以下简称汽车企业）可通过工业和信息化部节能与新能源汽车财税优惠目录申报管理系统，自愿提交节能车型报告、新能源车型报告（报告样本见附件7、附件8），申请将其产品列入《目录》，并对申报资料的真实性负责。　　工业和信息化部、税务总局委托工业和信息化部装备工业发展中心负责《目录》组织申报、宣传培训及具体技术审查、监督检查工作。工业和信息化部装备工业发展中心审查结果在工业和信息化部网站公示5个工作日，没有异议的，列入《目录》予以发布。对产品与申报材料不符、产品性能指标未达到标准或者汽车企业提供其他虚假信息，以及列入《目录》后12个月内无产量或进口量的车型，在工业和信息化部网站公示5个工作日，没有异议的，从《目录》中予以撤销。　　五、船舶检验机构在核定检验船舶主推进动力装置时，对满足本通知新能源船舶标准的，在其船用产品证书上标注“纯天然气发动机”字段；在船舶建造检验时，对船舶主推进动力装置船用产品证书上标注有“纯天然气发动机”字段的，在其检验证书服务簿中标注“纯天然气动力船舶”字段。　　对使用未标记“纯天然气发动机”字段主推进动力装置的船舶，船舶所有人或者管理人认为符合本通知新能源船舶标准的，在船舶年度检验时一并向船舶检验机构提出认定申请，同时提交支撑材料，并对提供信息的真实性负责。船舶检验机构通过审核材料和现场检验予以确认，符合本通知新能源船舶标准的，在船舶检验证书服务簿中标注“纯天然气动力船舶”字段。　　纳税人凭标注“纯天然气动力船舶”字段的船舶检验证书享受车船税免税优惠。　　六、财政部、税务总局、工业和信息化部、交通运输部根据汽车和船舶技术进步、产业发展等因素适时调整节能、新能源车船的认定标准。在开展享受车船税减免优惠的节能、新能源车船审查和认定等相关管理工作过程中，相关部门及其工作人员存在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等违法行为的，按照《公务员法》、《行政监察法》《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等有关国家规定追究相应责任；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处理。　　对提供虚假信息骗取列入《目录》资格的汽车企业，以及提供虚假资料的船舶所有人或者管理人，应依照相关法律法规予以处理。　　七、本通知发布后，列入新公告的各批次《目录》（以下简称新《目录》）的节能、新能源汽车，自新《目录》公告之日起，按新《目录》和本通知相关规定享受车船税减免优惠政策。新《目录》公告后，第一批、第二批、第三批车船税优惠车型目录同时废止；新《目录》公告前已取得的列入第一批、第二批、第三批车船税优惠车型目录的节能、新能源汽车，不论是否转让，可继续享受车船税减免优惠政策。　　八、本通知自发布之日起执行。《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工业和信息化部关于节约能源使用新能源车船车船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5〕51号）以及财政部办公厅、税务总局办公厅、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加强<享受车船税减免优惠的节约能源 使用新能源汽车车型目录>管理工作的通知》(财办税〔2017〕63号)同时废止。附件(下载)：[1.节能乘用车综合工况燃料消耗量限值标准.docx](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7/P020180727343666605403.docx)　　[2.节能轻型商用车综合工况燃料消耗量限值标准.docx](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7/P020180727343666838783.docx)　　[3.节能重型商用车综合工况燃料消耗量限值标准.docx](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7/P020180727343667078691.docx)[4.新能源汽车产品技术标准.docx](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7/P020180727343667267543.docx)[5.新能源汽车产品专项检验标准目录.docx](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7/P020180727343667498044.docx)[6.新能源汽车企业要求.docx](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7/P020180727343667696508.docx)[7.节能车型报告.docx](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7/P020180727343667895142.docx)[8.新能源车型报告.docx](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7/P020180727343668109758.docx)财政部税务总局工业和信息化部交通运输部　　2018年7月10日   　 　　 |